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신림~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(2공구)]

- 점검일시 : 2020.05.12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진혁

### 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RBM으로 터널 천단에서 지표까지 수직구를 굴진하는 구간에 안전통제 및 시차작업계획 등 안전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추가보완 사항 반영 요망
- ① 굴진부산물은 낙하위험이 없을 정도의 입경이나 굴진 중 공벽보강이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벽에서 암석이 부분적으로 붕락될 경우 낙하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완조치 요망
- ② 출입구에 분진방지와 통제를 위해 커튼을 설치한 것은 매우 적절하였으나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식 부착 요망
- ③ 관련 작업자 암석 붕락 가능성에 대하여 교육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,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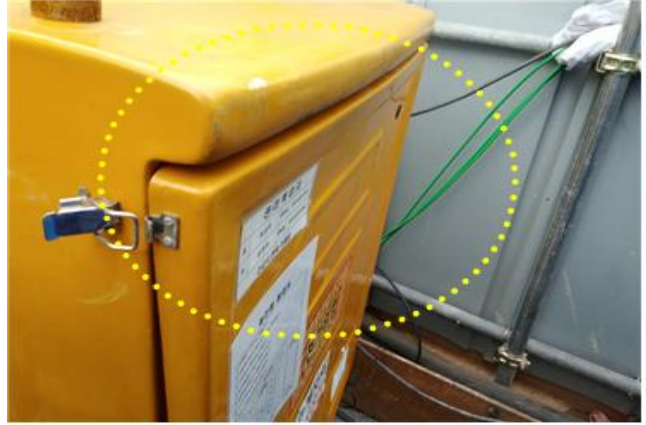
### 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터널 내의 작업장은 소음이 크고 조도가 낮기 때문에 고소작업대(시저형) 이동 시에 하부작업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광등을 앞/뒤로 부착하거나 소리가 나도록 하는 등 접근이 통제되도록 조치 요망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36(고소작업대(시저형))

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RBM 작업장 메인 분전반 외부에서도 수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전등 설치 요망
  - 해당 분전반의 수전부 배선용차단기, 분전용 누전차단기 충전부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 소켓이나 전기테이프 등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 요망
  - 또한 전기가 사용되고 있는 누전차단기에는 출력위치를 보호 판에 표기하여 위급 시에 긴급히 전기가 차단될 수 있도록 관리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(전기 기계/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), 제303조(전기 기계/기구의 적정설치 등)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16(분전반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터널 내의 위험물질에 대한 MSDS 게시는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정비 요망
- RBM 작업장 위험물 보관소에 위험물 외에 안전화, 슬리퍼, 공구, 측량대 등 반출 요망
- RBM 작업장 위험물 보관소에 가스용기 사용 규칙 게시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(가



스등의 용기)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24(위험물 보관소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RBM 장비운영실은 컨테이너 형식으로 천정에 확산소화기 설치 요망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41(가설 사무실/창고)



○ [모범사례]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현장 규모를 감안하여 대형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우수사례

